usell
우방 아이유쉘

안성 공도 우방 아이유쉘 입주자 모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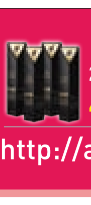
2014 ~ 2017 국가소비자중심
4년연속 브랜드대상 수상
http://ansung.iusell.co.kr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17. 7. 2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17.09.15)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5)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만19세 미만인 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포함]인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하나,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안성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 2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및 순위체계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발생 요건은 '1년, 12회 납입'으로 변경 (단, 청약통장별 해당 가입은행의 납입인정 예치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청약은 '1, 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순위인정 기준 완화 : 가입기간+지역별 청약예치금(잔액) 충족시 즉시 순위 인정.
  -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 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 가능.
  -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제한 완화 : 청약 가입자의 납입인정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 청약통장 예치금액 변경기간 제한완화 : 주택규모 변경 제한기간(2년) 폐지 및 주택규모 상향시 청약제한(변경 전 규모로만 청약 가능) 기간(3개월) 폐지.
  -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60㎡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당첨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기도 안성시는「주택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수도권 정비계획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하는 민영주택입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 본 아파트는「주택법」64조 및「주택법 시행령」73조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7.10.10) 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단,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본 아파트의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고령자와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5)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과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주택법」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신청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건축과－제54549호(2017. 09 . 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0-133 일원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6층, 7개동 총 7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27세대 포함(기관추천 특별공급 69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6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0세대)]
-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타입	공급 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 면적			기타공용(지하주차장 포함)	계		특별공급				특별 공급 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주택	2017001261-01	62.0750	62	276	62.0750	22.8942	84.9692	35.9029	120.8721	40.4756	27	27	27	8	89	187	13
	2017001261-02	63.2554	63	68	63.2554	24.4757	87.7311	36.5855	124.3166	41.2453	6	6	6	2	20	48	3
	2017001261-03	78.0415	78A	150	78.0415	27.8633	105.9048	45.1376	151.0424	50.8865	15	15	15	4	49	101	6
	2017001261-04	78.7690	78B	75	78.7690	28.2729	107.0419	45.5583	152.6002	51.3609	7	7	7	2	23	52	3
	2017001261-05	84.5501	84	146	84.5501	30.3910	114.9411	48.9020	163.8431	55.1304	14	14	14	4	46	100	6
합 계				715							69	69	69	20	227	488	31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 동,호	층별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계약시	2차 '17.11.10	1차 '18.02.26	2차 '18.08.27	3차 '19.02.25	4차 '19.08.26	5차 '19.12.30	6차 '20.04.27	
62 104동 1,2,4호 105동 1,2,4호 106동 1,2,4호 107동 1,2,3,4호	2층	13	55,481	133,919	189,400	5,000	13,940	18,940	18,940	18,940	18,940	18,940	18,940	56,820
	3층	13	55,481	136,919	192,400	5,000	14,240	19,240	19,240	19,240	19,240	19,240	19,240	57,720
	4층	13	55,481	139,919	195,400	5,000	14,54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58,620
	기준층	237	55,481	142,919	198,400	5,000	14,840	19,840	19,840	19,840	19,840	19,840	19,840	59,520
63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3호	2층	3	56,536	132,864	189,400	5,000	13,940	18,940	18,940	18,940	18,940	18,940	18,940	56,820
	3층	3	56,536	135,864	192,400	5,000	14,240	19,240	19,240	19,240	19,240	19,240	19,240	57,720
	4층	3	56,536	138,864	195,400	5,000	14,54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19,540	58,620
	기준층	59	56,536	141,864	198,400	5,000	14,840	19,840	19,840	19,840	19,840	19,840	19,840	59,520
78A 101동 3,5호 102동 3,5호 103동 3,5호	2층	6	69,752	166,648	236,400	5,000	18,640	23,640	23,640	23,640	23,640	23,640	23,640	70,920
	3층	6	69,752	169,648	239,400	5,000	18,940	23,940	23,940	23,940	23,940	23,940	23,940	71,820
	4층	6	69,752	172,648	242,400	5,000	19,240	24,240	24,240	24,240	24,240	24,240	24,240	72,720
	기준층	132	69,752	175,648	245,400	5,000	19,540	24,540	24,540	24,540	24,540	24,540	24,540	73,620
78B 101동 4호 102동 4호 103동 4호	2층	3	70,402	160,998	231,400	5,000	18,140	23,140	23,140	23,140	23,140	23,140	23,140	69,420
	3층	3	70,402	163,998	234,400	5,000	18,440	23,440	23,440	23,440	23,440	23,440	23,440	70,320
	4층	3	70,402	166,998	237,400	5,000	18,740	23,740	23,740	23,740	23,740	23,740	23,740	71,220
	기준층	66	70,402	169,998	240,400	5,000	19,040	24,040	24,040	24,040	24,040	24,040	24,040	72,120
84 101동 1,2호 102동 1,2호 103동 1,2호	2층	6	75,569	173,831	249,400	5,000	19,940	24,940	24,940	24,940	24,940	24,940	24,940	74,820
	3층	6	75,569	176,831	252,400	5,000	20,240	25,240	25,240	25,240	25,240	25,240	25,240	75,720
	4층	6	75,569	179,831	255,400	5,000	20,540	25,540	25,540	25,540	25,540	25,540	25,540	76,620
	기준층	128	75,569	182,831	258,400	5,000	20,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25,840	77,520

※ 기준층 : 5층부터 각 동의 최상층까지.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의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선납일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공통사항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동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시공 및 설치)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는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 · 층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 · 호수가 배정됨.
  -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함.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가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 ▶kb부동산 ▶주택청약 ▶인터넷청약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APT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 일반공급
  - • 신청자격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15)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별	62	63	78A	78B	84
마이너스 옵션 공사비	14,395,000	14,669,000	18,098,000	18,267,000	19,607,000

※ 상기금액은 취득세 등이 미포함 금액이며, 기본선택 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주택형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분양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공회사
상 호	㈜우방건설산업	㈜우방건설산업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산본역사 3층 일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4(산본동, 산본역사 3층 일부)
등 록 번 호	200111-0026017	200111-0026017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47-9 ■ 홈페이지 주소 : http://ansung.iusell.co.kr/ ■ 분양문의 : ☎031-652-3933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견본주택 주소 :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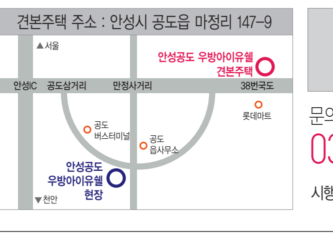

62㎡ / 63㎡ / 78㎡ / 84㎡
총 715세대

문의전화 031)652-3933

시행 · 시공 SM (주) 우방건설산업